

## ＜ 수시 공시 ＞

2011.05.03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제 3 항 제 5 호에 의거, 당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며,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(투자신탁의 해지)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해당 집합투자기구 및 내역

| 구분 | 집합투자기구 명칭                    | 발생일<br>설정잔액(원) | 발생일<br>순자산총액(원) | 기준가격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  | 신영마라톤그린밸류증권자투자신탁(주식)<br>A 형  | 2,689,144,934  | 3,089,609,041   | 1,148.92 |
| 2  | 신영마라톤그린밸류증권자투자신탁(주식)<br>C1 형 | 627,673,793    | 718,735,443     | 1,145.08 |
| 3  | 신영마라톤그린밸류증권자투자신탁(주식)<br>C2 형 | 1,801,977,663  | 2,069,084,885   | 1,148.23 |

2. 공시 사유 : 소규모펀드(1개월)

3. 발생 일자 : 2011.05.02.

4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